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 신설〉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9.
3. 회부연월일 : 2026.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않음.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산 단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현행	개정안
	<u>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산단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산단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u> <u>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u>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u>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¹⁾을 의미하고 2021년 10월 최초 지정 이후 현재 전국 89개의 시·군·구가 지정·고시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비인구감소지역을 압도하는 등 지역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데 2021년 10월 대비 2024년 10월의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율(0.82%)과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3.51%)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전체 인구 감소 위기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²⁾.

현행법은 해당 문제 해결 및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김용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3년, 인구 변화는?」, 나라살림브리핑 제427호, 나라살림연구소, 2025.2.27.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또한,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지원사항과 달리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기업⁴⁾ 또는 장애인기업⁵⁾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선구매 제도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업의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⁶⁾.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중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7. 26., 2025. 10.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지정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지역적·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5년 단위로 지정·고시되어 수혜대상이 가변적임.

따라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제도에 특정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혜택을 편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비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원거리 소재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에 따른 비용 증가 및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하는 데 따른 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기술수준, 제품의 품질 또는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우선구

매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유사한 사례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산업단지 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소재지역 및 산업단지 입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공구매에서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비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미입주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른 우선구매제도가 전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보다는 중소기업 간 구매물량의 재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⁷⁾인 반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중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수요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가 일정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의무구매비율을 설정할 경우, 중소기업제품의 전체 구매규모 자체가 확대되기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 중 일부가 해당 기업의 제품으로 재배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일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당초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전반의 구매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우선구매 의무가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와 전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라는 정책적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타지역 및 비산업단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공공기관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중소기업 정책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